

제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68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안홍모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0.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28,715,068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15,068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6. 피고의 배우자인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75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 2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1. 5. 10. C과 협의이혼 하였다.

라. C은 2021. 6.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0. 재산분할(다음부터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가장 이혼하였다. 설사 적법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이 가장 이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정당한 재산분할의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5년 당시 분양가가 192,000,000원인 점, ②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95,000,000원을 변제한 점, ③ 피고가 C의 딸 D(2011년 2월생)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C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 둔 돈으로 함께 매수한 점, ⑤ 이혼에 대한 책임이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 진 재산처분으로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